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〔이인식 의원 발의〕

의안번호	2485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4. 2. 2.

발 의 자 : 이인식 의원

찬 성 자 : 고성미, 엄셋별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(안 제9조 신설)

나.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(안 제11조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 및 제3조의2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
2) 입법예고: 2024. 2. 5. ~ 2023. 2. 13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 
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2조로 하고, 제9조 및 제11조를  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)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 
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  
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  
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  
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.

③ 제1항에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
하는 경우 변호사, 교수 등 관계 전문가와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을  
수 있다.

제11조(신분보장)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9조(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)</u></p> <p><u>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변호사, 교수 등 관계 전문가와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</u></p>
<p><u>제9조 (생 략)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10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</u></p> <p><u>제11조(신분보장)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</u></p>

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0조 (생략)

제12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

# 현행조례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

[시행 2020. 09. 18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124호, 2020. 09. 18.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복지법인 등”이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시설,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.
2. “사회복지사 등”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
2.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3.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,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처우개선 등 사업)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2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
3.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·훈련 사업
4.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
5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)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

## 관계 법령

### □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

[시행 2023. 3. 28.] [법률 제19296호, 2023. 3. 28., 일부개정]

**제3조(정의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,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·공표하여야 한다.

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**제3조의2(처우개선위원회)**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2.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**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